

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돌산갓
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2 월 6 일

여 수 시 장



여수시 조례 제2009호

붙임 여수시 돌산갓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009호

여수시 돌산갓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돌산갓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제21조, 제22조제1항”을 “제37조”로,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”를 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획예산과장, 미래농업과장, 특산품육성과장과 시의회”를 “돌산갓 업무 담당 부서장, 농산물유통 업무 담당 부서장과 여수시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 담당주사가”를 “돌산갓 업무 담당 팀장이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에 의거”를 “제37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마늘, 생강”을 “마늘, 생강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위탁운영방법이나 임대료 등은 「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23조를 준용한다.

제11조제1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경우 예”를 “경우에”로 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설치운영”을 “설치하여 운영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2회이상”을 “2회 이상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전단 중 “「식품위생법」 제26조”를 “「식품위생법」 제40조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하여”를 각각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「농산물 품질관리법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”를 “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”으로, “「농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“제조 기능인”이라 함은 전래된 제조기법에 <u>의하여</u> 돌산갓김치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과 관련 법령에 <u>의한</u> 인증 증서를 보유한 자를 말한다.	8.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.
제3조(적용대상) 다음 각호의 자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특산단지에서 생산한 원재료에 의하여 돌산갓으로 제조·가공·표시 및 판매를 하고자 하는 때에 적용한다.	제3조(적용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「식품위생법」 제 <u>21조</u> , 제 <u>22조제1항</u> 및 「식품산업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<u>의거</u> 신고하거나 지정된 자	1. ----- <u>제37조</u> ----- ----- ----- - <u>따라</u> ----- --
2. 관계 법령에 <u>의하여</u> 식품의 제조·가공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자	2.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

3. (생 략)

제4조(심의위원회) ①(생 략)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 예산과장, 미래농업과장, 특산품육성과장과 시의회 의원 3명, 돌산갓 관련 단체 및 돌산갓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 담당주사가 된다.

⑤ ~ ⑦ (생 략)

제6조(제조업의 신고요건) 돌산갓김치의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자는 「식품위생법」에 의거 신고한 자중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제조기능인이거나 제조기능인을 고

3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심의위원회) ①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③ -----

-----돌산갓 업무 담당부시장, 농산물유통 업무 담당 부시장과 여수시의회 -----

-----.

④ -----

-----돌산갓 업무 담당 팀장이 -----

-----.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제조업의 신고요건) -----

-----제37조에 따라

-----.

용한 자에 한한다.

제9조(원·부자재 배합비율)

① 돌산갓김치 맛을 보존하고 가공방법의 표준화를 기하기 위하여 돌산갓김치 제조시 원자재는 돌산갓, 부자재의 기본종류는 고춧가루, 마늘, 생강, 찹쌀풀, 젓갈류, 물고추, 소금등 7종 이상으로 한다.

② (생 략)

제10조(특산단지 위치 및 운영)

① ~ ④ (생 략)

⑤ 위탁운영방법이나 임대료 등은 「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22조와 「여수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」 제3조 제4조를 준용한다.

⑥ (생 략)

제11조(특산단지 농가자격) 특산단지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조례 제5조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

2. (생 략)

제12조(생산농가 지원) 시장은

제9조(원·부자재 배합비율)

① -----

- 마늘, 생강-----

- 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특산단지 위치 및 운영)

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위탁운영방법이나 임대료 등은 「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23조를 준용한다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특산단지 농가자격) --

- .

1. ----- 따라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생산농가 지원) -----

돌산갓의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산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단,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만들어 운영할 시 지원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~ 3. (생 략)

제13조(제조업체 지원) ① · ② (생 략)

③ 사업비의 보조지원 또는 융자금의 지원은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5조(제품검사실 설치운영)

① (생 략)

② 제품검사실은 시에서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제17조(표시제한 및 처분) ①

(생 략)

② 특산단지내 돌산갓 생산자와 돌산갓김치 제조 영업자가 2회이상 자가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품질보증 표지를 부착하였을 때는 재배농업인 및

----- 경우에 -----
-----.
-----.
-----.
-----.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제조업체 지원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-----
-----.

제15조(제품검사실 설치운영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설치하여 운영 -----
-----.

제17조(표시제한 및 처분) ①
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2회 이 상 -----
-----.

제조기능인 자격을 취소하고, 향후 3년간에 걸쳐 표지 사용 허가 재신청을 제한한다.

제18조(건강진단) ① 돌산갓김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는 「식품위생법」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.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돌산갓김치 제조업에 종사할 수 없다.

제19조(지리적표시제 사용 자격) ① 「농산물 품질관리법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신청은 여수시에서 생산된 돌산갓을 원료로 하여 돌산갓김치를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「농산물 품질관리

-----.

제18조(건강진단) ① -----
----- 「식품
위생법」 제40조-----

-----.
----- 따라 -----

-----.

② ----- 따라 -----

-----.

제19조(지리적표시제 사용 자격) ①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-----

----- 「농
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

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또는 제조업체로 구성된 단체(법인에 한한다)에 한하여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제조·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는 특별한 사유없이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0조(허위표시등의 금지) ①
(생략)

②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이 아니 된 업체가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호의 규정에 따른 -----

-.

② ----- 따른 -----

-.

제20조(허위표시등의 금지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따른 -----

-----.